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경영위기(또는 부실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75호)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62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경영위기(또는 부실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3
※ 참고자료	
1. 소상공인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복합지원 체계	10

I. 제안경위

1. 송재봉의원안(제2216575호)

1. 발 의 자 : 송재봉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5.

3. 회부연월일 : 2026. 2. 6.

2. 구자근의원안(제2216862호)

1. 발 의 자 : 구자근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13.

3. 회부연월일 : 2026. 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송재봉의원안(제2216575호)

최근 소상공인의 부채와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시책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

상공인에 대한 사후적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어 향후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소상공인이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원정책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관련 해당 시책의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과 협력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관련 시책을 안내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 시책이 상호 간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2. 구자근의원안(제2216862호)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부실 소상공인이 증가할 우려가 큼에도 현행 관련 정부 시책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후적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적기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이에 더하여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의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개별 소상공인 입장에서 본인에게 맞는 지원 정책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정책 집행 체계가 효율적이지 않음.

이에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으로 하여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관련 정부 시책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 시책이 상호간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간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경영위기(또는 부실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개정안은 정부에 대하여 경영상 위기에 처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경영이 부실하거나 그러한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부실우려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경영위기(또는 부실우려)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경영 악화(또는 경영 부실)의 추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선별과 안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집한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위기(또는 부실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상호 간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현 행	송재봉의원안	구자근의원안
<신 설>	제9조의2(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경영상 위기에 처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이하 이 조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중소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경영 악화의 추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9조의2(부실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경영이 부실하거나 그러할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이하 이 조에서 “부실우려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중소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부실우려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경영 부실 추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3.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4.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및 자금 지원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선별 및 안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각종 시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 간 협력하여야 한다.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3.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4.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선별 및 안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부실우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또는 폐업·재기·취업·복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각종 시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간 협력하여야 한다.
--	--	---

현행법 제9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다만,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어 한계상태의 소상공인이 영업을 지속함에 따라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인지 부족으로 정부 지원 정책을 알지 못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음.

또한, 경영위기나 부실 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위기 징후 포착 및 경영진단부터 자금, 재기지원, 채무조정 등 맞춤형 정책 지원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나,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지원²⁾함에 따라 단계별 정책의 연계 부족으로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지원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도 있음³⁾.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0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93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
8.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의 지원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예를 들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개선이나 취업·재창업 지원 등 재기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담당하는 반면, 채무조정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파산 절차는 법원에서 이루어짐.

3)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경영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 발표”, 2025. 10. 15.

방안」을 발표하여, ▲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및 정보 사각지대 해소, ▲ 다수 정책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강화 등의 기본방향을 세우고, 전체 대출 소상공인(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발견된 소상공인에게 위험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관련 정책을 안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민간은행이 함께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운영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경영진단 제공 및 상황별 맞춤형 정책까지 안내할 계획이며, 여러 기관에 산재한 지원제도를 연계하여 부실위기 소상공인이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함.

관련하여, 중소기업부는 2026년 3월 중소기업부가 보유한 소상공인 DB(약 134만명) 기반의 맞춤형 정책 알림 서비스인 ‘소상공인 알림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혀, 정책정보 홍보 수신에 동의한 소상공인에게 정부 지원 정책의 대상 요건과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⁴⁾.

4) 중소기업부 보도자료, “소상공인 정책, 이제 맞춤형 알림으로 바로 확인… 중기부, ‘소상공인 알림톡’ 서비스 시작”, 2026. 3. 10.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볼 때, 두 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에 사후적 지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체계를 사전 예방적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선함으로써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여러 기관에 분산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연계한 복합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기관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서는 경영위기(또는 부실우려) 소상공인의 요건이나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이 불명확한바, 정책기관별로 지원수준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기준·범위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입법례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는 “부실징후기업”의 정의⁵⁾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등 기업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서울특별시의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사업’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부실징후기업”이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이하 “부실징후”라 한다)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에서는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① 서울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일 것, ② 업력이 2년 이상이며 최근 6개월 또는 전년 대비 매출 감소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이거나 재해중소기업 확인증(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기업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⁶⁾.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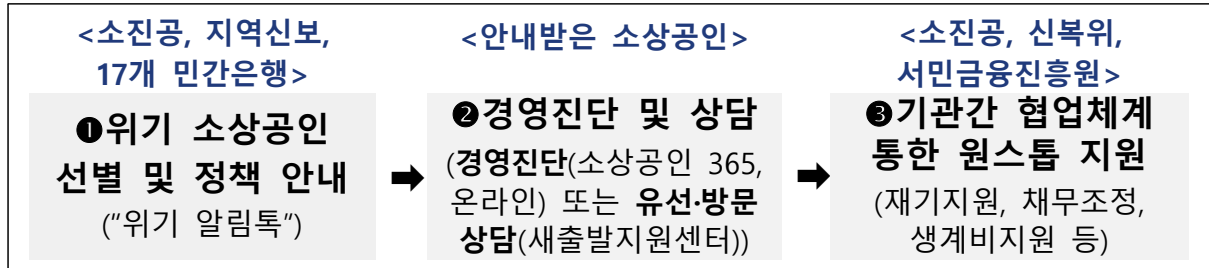
문 의 처
02)6788-5465

6) 동 사업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위기 소상공인”에 대하여 현장방문 예비진단, 경영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솔루션 이행 비용(유지기업의 경우 경영개선 비용, 한계기업의 경우 사업정리 비용) 등을 지원함.

1

소상공인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복합지원 체계

< 위기 징후 모니터링 및 복합지원 개요 >



① 위기 소상공인 선별 및 정책 안내(“26.3.31~, 월·분기별)

- 대출상환 연체 차주 및 연체우려 차주 등을 매월(소진공·지역신보) 또는 분기별(민간은행) 선별
- 선별된 위기 소상공인에 ‘위기 알림톡’을 발송하여 온라인 경영진단, 새출발지원센터 상담 방법 등 안내

② 경영진단 및 상담

- 개별 소상공인은 「내 가게 경영진단*(온라인)」 통해 본인 점포의 경쟁력과 생존 가능성 등 확인
 - *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 365)에서 지역내 동종업종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본인 가게 경쟁력, 생존가능성, 성장전망, 고객 관심도에 대한 객관적 지표 확인 가능
-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전국 78개소)에 유선·방문 상담 통해 상황별 맞춤형 정책 확인
 - * 소진공 관련 정책 : 경영개선, 정책자금, 채무조정, 폐업지원, 취업·재창업 지원 등

③ 기관간 협업 통한 원스톱 지원(“26.3.31~)

- 기존 재기지원(소진공)에 채무조정(신복위), 정책서민금융(서금원) 등을 연계하여 지원
 - * 상담과정에서 타기관 지원도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상자 정보를 전달하고 전달받은 기관에서 상담 및 지원 연계(소진공·신복위·서금원 정보시스템 연계 完)
(예시 : 재창업 실전교육[재기지원]과 함께 기존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상담·안내·지원 병행)